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등록 및 허가 사항의 통보, 확인 등 필요한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 반영하고, 친환경 골재생산 유도를 위해 환경영향 저감 시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골재채취능력평가 증량 항목 신설 및 바다 골재채취업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시 지역별 항차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골재채취능력평가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부적인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중 “법 제4조의2제3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국수자원 공사를”을 “대행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5조”를 “법 제4조의2제3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를 “대행기관 이”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1항”을 “골재채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 또는 처분내용을 해당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채취허가 또는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수리를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협회 및 제1조의3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 법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양도 신고
5. 법 제19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의 취소 등

제12조제3항 중 “제12조의3”을 “제12조의2, 제1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
 2. 제12조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3.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검토사항 적합여부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일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허가 신청서는 반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다른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보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부적격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 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 이외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허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골재채취허가량은 신청업체의 골재채취능력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하며(하나의 업체가 2곳 이상에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각각의 골재채취허가량을 합산하여 당해 업체의 골재채취능력범위 내로 허가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업체에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채취 능력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

척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처리결과를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8조의2를 제19조의2로 하고,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으로 하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 등)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
2.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적정 여부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의 확인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다른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중전의 제18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골재채취능력의 평가·공시 및 평가시스템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정해진 수수료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 후단 중 “방법”을 “방법(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8조제2항 및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 경우, 협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은 표 제3호 단서, 같은 표 제4호 가목 8)에서 같다)”으로 한다.

같은 표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바다골재채취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바다골재채취 허가지역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같은 표 제4호 가목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환경영향 저감을 위하여 시설·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이행한 경우 : 100분의 3

같은 표 제4호 나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균재해율의 1배 초과 2배 이하 : 100분의 5

나) 평균재해율의 2배 초과 3배 이하 : 100분의 10

다) 평균재해율의 3배 초과 또는 서류 미제출 시 : 100분의 15

별지 제1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능력평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별표 2]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제14조의3 관련)

1. (생략)

2. (생략)

3. 위 산식 중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은 골재채취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장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단독 소유로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로서 가목에 따른 주 시설·장비와 보조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나목과 다목에 따른 물량의 합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이 경우 장비별 채취능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8조제2항 및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 경우, 협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은 표 제3호 단서, 같은 표 제4호 가목 8)에서 같다)에 의하여 산정하며, 해당 장비에 대한 장비채취능력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장비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바다골재채취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바다골재채취 허가지역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생 략)

4. (생 략)

가. 증량항목 및 증량비율

1) ~ 7) (생 략)

8) 환경영향 저감을 위하여 시설·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이행한 경우 : 100분의 3

나. 감량항목 및 감량비율

1) ~ 3) (생 략)

4)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량비율

가) 평균재해율의 1배 초과 2배 이하 : 100분의 5

나) 평균재해율의 2배 초과 3배 이하 : 100분의 10

다) 평균재해율의 3배 초과 또는 서류 미제출 시 : 100분의 15

5) ~ 7) (생 략)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개정 2020. 00. 00.>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 내용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 신청 업종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 용도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 일자		
	제출처		
	우편물 수령지		

「골재채취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골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발급	→	발송
신청인	한국골재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골재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3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그 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 ----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 ----- -- <u>대행기관을</u> ----- ----- ----- ----- ----- -----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골	⑤ 법 제4조의2제3항----- ----- <u>대행기관이</u> -----

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①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① 협회

<신 설>

는 구청장 및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

2. 제12조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3.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검토 사항 적합여부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서 정한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일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허가 신청서는 반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다른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보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부적격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 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 이외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허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골재채취허가량은 신청업체의 골재채취능력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하며(하나의 업체가 2곳 이상에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각각의 골재채취허가량을 합산하여 당해 업체

	<u>의 골재채취능력범위 내로 허가하여야 한다</u>), 2개 이상의 업체에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채취능력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제17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 (생략)	제17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처리결과를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u><신설></u>	제17조의2(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 등)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
	2.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적정 여부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의 확인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다른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2 ~ 제18조 (생략)	제18조 ~ 제19조 (현행 제17조의 2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18조의2(수수료) ① (생략)	제19조의2(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법 제48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골재채취능력의 평가·공시 및 평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 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9조 (생 략)	가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정해진 수수료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 ----- -----.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	---